

[사 건 명] 행심 2016-21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2016. 3.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특별교육이수 5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3.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폭력, 금품갈취, 학업방해 등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2016. 3. 3. 청구인들에 대한 진술서 작성당시 보호자의 참여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위 진술서들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증거인만큼, 2016. 3.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처분도 그 하자를 승계한 위법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들이 2015. 경부터 2016. 2. 기간중 ▲▲▲에게 수차례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주었고,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설령 ▲▲▲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증빙자료를 갖춘 일부의 사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2016. 3. 3. 청구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면서 보호자의 참여가 없었지만, 학교폭력대책담당 경찰관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6. 3. 3. 진술서에만 근거하여 조치한 것이 아니며, 이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들과 보호자들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반영하였던 만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 ○○○은 ▲▲▲이 대화속에서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말을 잘 집중하지 않아서 못 듣거나 하는 행동이 반복되자, 계속 말로 얘기를 하였으나, ▲▲▲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점점 특특치기도 하고 화가나서 발로 찬 적이 있고, 야간자율학습 퇴출과 관련하여 ▲▲▲의 정강이를 폭행하였으며, 가슴을 때린 적이 있고, 뺨때리기 게임을 통하여 폭행하였다.
- 2) 청구인 △△△은 ▲▲▲의 행동이 답답해서 화가나서 여러차례 ▲▲▲의 팔과 어깨를 특특치고, ▲▲▲의 머리카락이나 뒤통수, 등짝을 폭행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폭력, 금품갈취, 학업방해 등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금품갈취, 학업방해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들과 ▲▲▲의 주장이 상반되어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2016. 3. 3. 작성한 진술서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한 ▲▲▲에 대하여 한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들이 ▲▲▲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2016. 3. 3. 청구인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당시 보호자의 참여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위 진술서들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증거인 만큼, 2016. 3.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처분도 그 하자를 승계한 위법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서들 상에 청구인들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진술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들이 2016. 3. 3. 진술서 작성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6. 3.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청구인들의 진술과 비교해보아도 특별히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들이 2016. 3. 3. 진술서 작성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의 모든 주장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에 대한 행위태양, ▲▲▲이 청구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교육 5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